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7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용혜인·한창민·서왕진

전종덕 · 정혜경 · 황명선

염태영 · 김남근 · 이광희

윤종오 • 박은정 • 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 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 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본문 또는 제11조에"를 "본문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본문 또는 제11조를"을 "본문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또는 제11조를"을 "본문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	제한 통고) ①			
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				
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				
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				
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				
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				
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				
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				
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				
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				
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				
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u>본문 또</u>	1 <u>본문</u>			
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	<u>에</u>			
될 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삭 제>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 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 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 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u>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u>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 판소장 공관
-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u> 지 아니하는 경우
 - <u>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u>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저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 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 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 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 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 제10조 <u>본문 또</u> 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 는 시위
- 2. ~ 5. (생략)
- ②・③ (생 략)

제23조(벌칙) 제10조 <u>본문 또는</u> 저 <u>제11조를</u>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3. (생 략)

레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1			
 1			ᆸᄆᅌ
1			
2. ~ 5. (§	현행과	같음)	
②·③ (현	행과 >	같음)	
네23조(벌칙)		<u>본</u> 문	<u>을</u>
1. ~ 3. (₹	현행과	같음)	